

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불합리한 수도요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선신청 시 개선수수료만 부과하도록 함.
- 나. 수도요금 감경 대상을 「수도법」에 따라 확대 정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⇒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무
- 다. 합 의 : 무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(2013.11.8. ~2013.11.29.)결과 : 의견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 중 “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”을 “정수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개전할 때에 개전수수료를 징수한다.

제3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43조제2항”을 “제28조제4항의 개전수수료와 제4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수도사용 요금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</u>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,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8조(수도사용 요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정수처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<u>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개선할 때에 개선수수료를 징수한다.</u></p>
<p>제38조(수수료) 시장은 해당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</u>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음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	<p>제38조(수수료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28조제4항의 개선수수료와 제43조제2항</u>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</p>	<p>제40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</u>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따른 수급자</u>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22조(요금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,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,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□ 수도법

제12조(수도사업의 경영 원칙)

- ① 수도사업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, 수도시설의 정비·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

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8조(공급규정)

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 시설·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.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